민원 인쇄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10-0640358
신청일	2026-10-16 11:48:26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서세종IC~장군면 사거리~가름로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전 한시적 해제(유예)', '시간제(출퇴근) 운영 전환' 및 신호체계 개선 심의 요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세종 IC와 장군면 사거리, 가름로를 이용해 통행하는 시민입니다.최근 해당 구간(편도 3차로)에 세종~공주 광역BRT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 및 도색되면서, 평소 5분이면 통과하던 서세종 IC ~ 장군면 사거리 구간이 명절 및 주말, 출퇴근 시간대에 최대 1시간까지 마비되는 극심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에 민원(1AD-2609-0000464)을 제기하여 받은 답변 및 첨부 보고서(『세종~공주 광역BRT 개발계획 수립』)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교통규제 재검토 및 신호체계 조정이 시급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장 문제점 및 객관적 근거] 1. 신규 BRT 미개통 상태에서의 차로 차단: 세종시는 향후 15~20분 간격의 신규 광역BRT가 다닐 예정이라고 하나, 현재는 개통조차 되지 않아 배차간격 30~60분인 기존 버스(500번, 550번)가 1시간에 1~2대 지나갈 뿐입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텅 빈 전용차로 때문에 일반 2개 차로에 모든 차량이 몰려 도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2. 용역 보고서조차 인정한 일반 차량의 영구적 피해: 세종시가 제출한 타당성 보고서(299쪽 [표 7-10])에 따르면, 전용차로 시행으로 인해 일반 도로이용자(승용차 등)는 매년 10억~16.74억 원의 통행시간 손실(마이너스 편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세종 구간의 승용차 감소 효과는 하루 고작 100대 수준(313쪽 [표 7-29])에 불과합니다. [세종경찰청 요청 사항 (교통규제심의 및 신호 조정)]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관장하는 세종경찰청에 다음 사항의 적극적인 검토 및 시행을 요청합니다. 1. 신규 광역BRT 실제 개통 시까지 전용차로 고시 유예(임시 해제): 실제 15~20분 배차의 광역버스가 투입되기 전까지는 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을 유예하여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협의해 주십시오. 2. 전일제(24시간)가 아닌 '시간제(출퇴근) 및 평일 전용차로'로 규제 완화: 서세종 IC 진출입 차량이 집중되는 장군면~공주 외곽 구간에 대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평일 낮 시간대와 주말·공휴일·명절에는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3. 장군면 사거리 일대 신호주기 연장 및 차로 혼용(점선) 구간 확대: 일반 차로 축소(3차로→2차로)로 인한 심각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세종 IC 진출입 및 장군면 사거리 직진·좌회전 신호주기를 현실화하고, 교차로 전후 혼용차로(점선) 구간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현장의 극심한 정체와 시민들의 고통을 고려하시어,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타당성 조사(공주 BRT 개발계획 발췌).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찰청 (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10-0645707
접수일	2026-10-16 11:48:26
담당자(연락처)	안태인 (044-320-8253)
처리예정일	2026-11-04 23:59:59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10-26 23:59, (변경후) 2026-11-04 23:59 - 사유 :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6-10-26 13:21:1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6-10-27 20:04:25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세종남부경찰서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세종~공주 광역BRT 전용차로 설치로 인한 교통정체 및 불편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본 광역BRT 사업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확장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없이 추진되었으며, 우리 경찰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 등에 근거하여 도로 확장 없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시 발생할 교통 혼잡 우려로 가로변 전용차로 운영 등 대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사업 시행 기관과의 협의가 최종 불발된 채 현재의 구조로 강행된 점 안내해 드리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이후 차로 축소 운영 등에 따른 극심한 지정체와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경찰도 무겁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 발생 시 교통 경찰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안내드리니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신규 광역BRT 개통 전까지 일반 차량 통행 허용' 또는 '시간제 완화'에 대해서는 해당 전용차로는 도로 중앙에 위치한 섬식/대면형 승강장 등 특수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일반 차량이 버스 차로에 진입할 경우 도로 구조상 과속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크며, 중앙차로 특성상 교차로 신호 운영 체계와 상충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중앙차로 통행은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끝으로 세종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종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044-320-8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끝.
첨부 파일	